소규모 합병 공고

코스모화학㈜는 상법 제 522 조 및 제 527 조 3 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코스모에코켐㈜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**합병방법** : 코스모화학㈜가 코스모에코켐㈜를 흡수합병함

2. **합병비율** : 1:0

3. **소멸회사의 현황**
   가. 상호 : 코스모에코켐㈜
   나. 본점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

4. **합병기일**: 2021 년 7 월 1 일

5. **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**
   가. 행사절차:
   2021 년 5 월 7 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금번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  나. 제출기간: 2021 년 5 월 7 일 ~ 2021 년 5 월 21 일
  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1) 명부주주 : 2021 년 5 월 21 일까지 당사 기획팀에 제출 (전화번호: 052-231-6700)
   (송부처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코스모화학 기획팀)
   2) 실질주주 : 2021 년 5 월 20 일까지(명부주주보다 1 영업일전) 거래 증권사에 제출
   (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)하거나 2021 년 5 월 21 일까지 당사 기획팀에 직접 제출)
   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   마. 상법 제 527 조의 3 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

2021 년 5 월 7 일

코스모화학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3
대표이사 안 성 덕